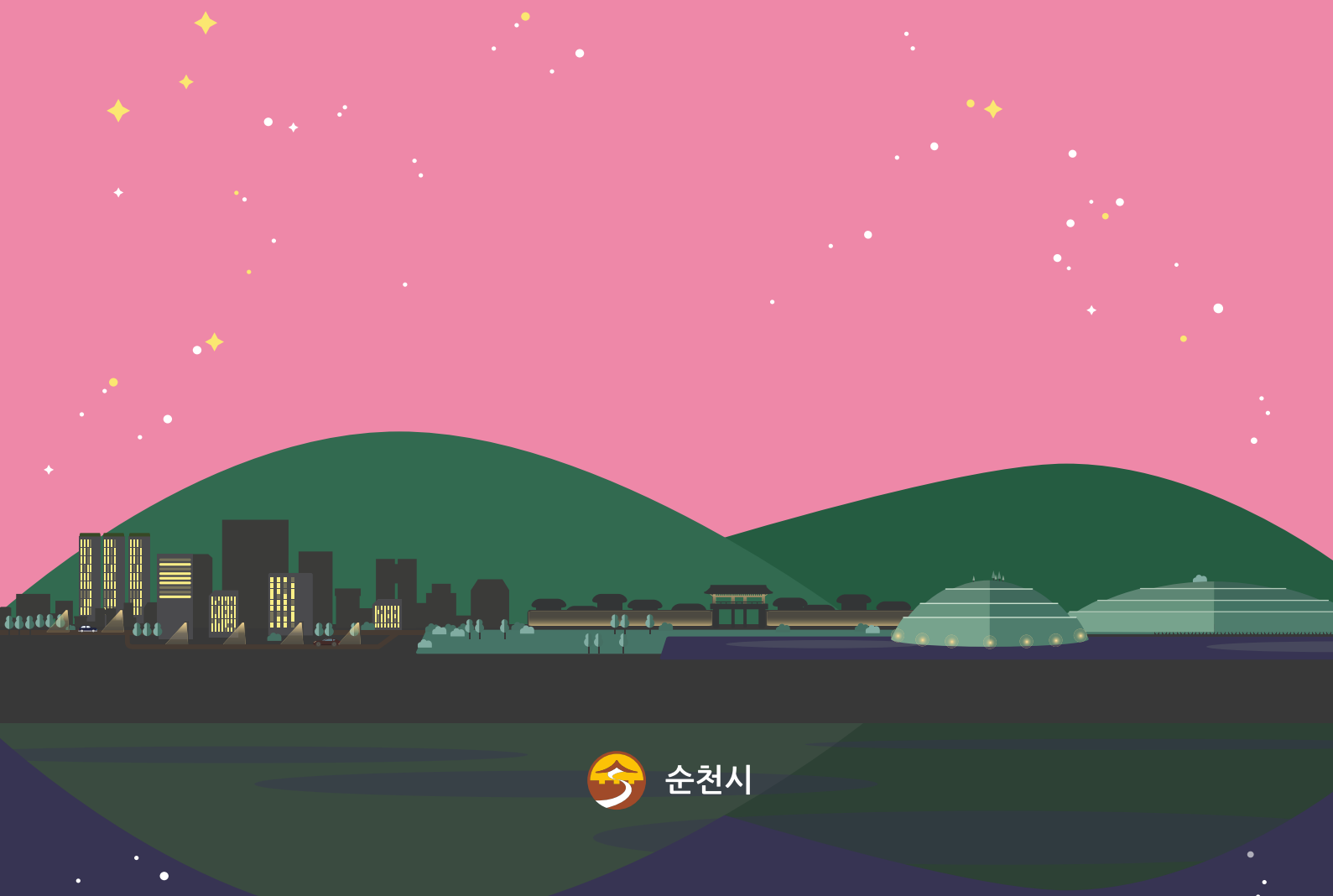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 순천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 제출문

순천시장 귀하

본최종보고서를 '순천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9. 11.

(주)누리플랜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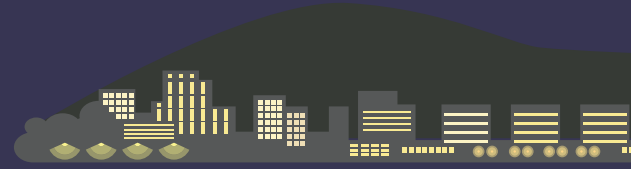
## 머릿말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이후 국내 야간경관 조명환경은 최근 디자인적 관점에 조명 엔지니어링 관점이 추가되어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야간경관 조명이 상업적이며 관광 활성화 중심에서 거주자의 쾌적하며 생활 친화적인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순천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본 용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국내 어느 지자체와도 차별화되는 순천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쾌적하면서도 매력적인 순천시 야간경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기간 동안 본 연구진은 순천시 야간경관 실행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경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위계획에 부합하면서도 순천시 고유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고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용역의 결과물로 인해 순천시 야간경관 환경이 자연, 문화, 사람이 조화로우며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키고 만들어 가는 빛의 공감 도시로 변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순천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 목차

## 01 계획의 개요

- 1. 배경 및 목적 ..... 03
- 2. 계획의 범위 ..... 04
- 3. 과업의 주요내용 ..... 05
- 4. 계획의 수립과정 ..... 08

## 02 조사분석

- 1. 관련법규 검토 ..... 11
- 2. 관련계획 검토 ..... 45
- 3. 국내외 사례조사 ..... 49
- 4. 야간경관 현황조사 ..... 54
- 5. 시민의식조사 ..... 70
- 6. 조사분석 종합 ..... 89

## 03 야간경관 기본구상 및 기본개념

- 1. 야간경관 기본구상 ..... 93
- 2. 야간경관 추진전략 ..... 95
- 3. 야간경관 기본개념 ..... 97

## 04 권역별 야간경관계획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 1. 권역별 야간경관계획 ..... 115
- 2. 도심권역 ..... 116
- 3. 순천만권역 ..... 118
- 4. 전원생활권역 ..... 120
- 5. 문화보존권역 ..... 122
- 6.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설정 ..... 124
- 7. 조명환경관리구역 예외지역 ..... 125

## 05 야간경관 형성계획 및 유형별 가이드라인

- 1. 야간경관 형성계획 ..... 133
- 2. 야간경관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요 ..... 136
- 3. 건축물 조명 ..... 139
- 4. 문화재 조명 ..... 142
- 5. 도시기반시설 조명 ..... 144
- 6. 도로/보행로 조명 ..... 147
- 7. 수변 조명 ..... 152
- 8. 오픈스페이스 조명 ..... 155
- 9. 기타 ..... 159

## 06 순천시 제안 경관조례의 개정(안)

- 1. 순천시 경관조례 개정의 제안 .....167
- 2. 순천시 경관조례 운영계획 .....171
- 3. 야간경관조명 체크리스트 .....176

## 07 실행계획 및 방안

- 1. 배경 및 목적 .....187
- 2. 추진전략 .....187
- 3. 야간경관 시범사업 대상지 계획·189
- 4. 순천시 야간경관 연출 실행방안·233
- 5. 순천시 야간경관 연출 고려사항·241

## 08 자료집

- 1. 용어정리 ..... 245
- 2. 관련 법 및 위계 ..... 250
- 3. 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활용 색인 ..... 251
- 4. 야간경관조명 자문 및 심의 대상 .....252
- 5. 조도기준(KS A 3011) ..... 254
- 6. 참고문헌 .....276



## 〈표목차〉

[표1-1] 공정예정표 .....	8	[표2-36] 신대지구 조도, 휘도측정 .....	61
[표1-2] 참여연구자 .....	8	[표2-37] 죽도봉공원 조도, 휘도측정 .....	61
[표2-1] 관련 법 및 위계 .....	11	[표2-38] 조례호수공원 조도, 휘도측정 .....	61
[표2-2] 빛방사 허용기준-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39		[표2-39] 상사휴게소 조도, 휘도측정 .....	62
[표2-3] 빛방사 허용기준-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		[표2-40] 순천자연휴양림 조도, 휘도측정 .....	62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	39	[표2-41] 순천시 야간경관 현장조사표 .....	64
[표2-4] 빛방사 허용기준-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		[표2-42] 순천시 문화재 .....	68
그 밖의 조명기구 .....	39	[표2-43] 기존 설문조사 항목 분석 .....	71
[표2-5] 빛방사 허용기준-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39		[표2-44] 야간활동 이용시 만족도 및 중요도 .....	81
[표2-6] 빛방사 허용기준-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40		[표3-1] 조명환경관리구역 구역지정 예시(서울) .....	99
[표2-7] 빛방사 허용기준-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		[표3-2] CPTED의 기본원리 .....	107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	40	[표3-3] CPTED의 의의 .....	107
[표2-8] 빛방사 허용기준-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		[표3-4] CPTED 지역별 실행 지침 .....	108
그 밖의 조명기구 .....	40	[표3-5] 에너지 절감 적용방안 .....	110
[표2-9] 빛방사 허용기준-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		[표4-1] 경관권역별 특징 .....	115
그 밖의 조명기구 .....	40	[표4-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설정 .....	124
[표2-10]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예 .....	42	[표5-1] 유형별 가이드라인의 구분 .....	136
[표2-11] 타 지자체 가이드라인 현황-1 .....	43	[표5-2] 가이드라인 적용방법 .....	136
[표2-12] 타 지자체 가이드라인 현황-2 .....	44	[표5-3] 건축물 조명 상세지침 .....	140
[표2-13] 문화예술회관 휘도측정 .....	54	[표5-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표2-14] 순천역 휘도측정 .....	54	제3호의 조명기구 .....	141
[표2-15] 순천문화건강센터 휘도측정 .....	54	[표5-5] 문화재 조명 상세지침 .....	143
[표2-16] 조곡성당 휘도측정 .....	55	[표5-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표2-17] 강변고가교 휘도측정 .....	55	제3호의 조명기구 .....	143
[표2-18] 순천부읍성 휘도측정 .....	55	[표5-7] 도시기반시설 조명 상세지침 .....	145
[표2-19] 기적의 도서관 휘도측정 .....	56	[표5-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표2-20] 팔마체육관 휘도측정 .....	56	제3호의 조명기구 .....	146
[표2-21] 에코그라드호텔 휘도측정 .....	56	[표5-9] 도로/보행로 조명 상세지침 .....	148
[표2-22] 낙안읍성 휘도측정 .....	57	[표5-10] 대로 상세지침 .....	149
[표2-23] 순천역세권(역전1길) 휘도측정 .....	57	[표5-11] 중로 상세지침 .....	149
[표2-24] 중앙사거리 일원 휘도측정 .....	57	[표5-12] 소로 상세지침 .....	149
[표2-25] 오천지구 휘도측정 .....	58	[표5-13] 보행로 상세지침 .....	150
[표2-26] 문화의 거리 휘도측정 .....	58	[표5-14] 도로/보행로 조명 공통 상세지침 .....	150
[표2-27] 패션의 거리 조도측정 .....	58	[표5-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표2-28] 중앙사거리 일원(중앙로) 조도측정 .....	59	제1호의 조명기구 .....	151
[표2-29] 중앙사거리 일원(연차로) 휘도측정 .....	59	[표5-16] 수변 조명 상세지침 .....	153
[표2-30] 아랫장 휘도측정 .....	59	[표5-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표2-31] 옷장 휘도측정 .....	59	제1호의 조명기구 .....	154
[표2-32] 옥천 휘도측정 .....	60	[표5-18] 오픈스페이스 조명 상세지침 .....	156
[표2-33] 오천지구 휘도측정 .....	60	[표5-19] 오픈스페이스 조명 설치 방법 .....	157
[표2-34] 동천 조도측정 .....	60	[표5-2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표2-35] 와온해변 휘도측정 .....	60	제1호의 조명기구 .....	158
		[표5-2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	158

[표5-22] 광고물 조명방법 및 효과 .....	159
[표5-23] 옥외광고물 상세지침 .....	161
[표5-2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조명기구 -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	162
[표5-2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조명기구 - 나. 그 밖의 조명기구 .....	162
[표5-26] 미디어 파사드 상세지침 .....	164
[표5-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	164
[표6-1] 조례 개정(안) 신규대조표 .....	168
[표6-2] 야간경관조명 자문 및 심의 대상 .....	173
[표6-3] 유지관리의 목표 및 방법 .....	174
[표6-4] 야간경관조명 소위원회 심의내용 .....	174
[표7-1] 추진전략-빛의 회복 .....	187
[표7-2] 추진전략-빛의 특화 .....	188
[표7-3] 추진전략-빛의 문화 .....	188
[표7-4] 현장조사-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 .....	189
[표7-5] 요소별 대상지 구분 .....	193
[표7-6] 도로 차선별 가로등 색온도 계획 .....	194
[표7-7] 대상지 리스트 .....	234
[표7-8] 예상 경관조명 공사비 .....	235
[표7-9] 예상 유지관리 비용 .....	236
[표7-10] 점검주기의 설정 .....	237
[표7-11] 일상점검요령 및 조치사항 .....	237
[표7-12] 정기점검요령 및 조치사항 .....	238
[표7-13] 점검 항목별 점검방법 .....	238
[표7-14] 조명기구의 관리 .....	239
[표7-15] 기록의 유지 및 관리 .....	239
[표7-16] 문제발생시 대처방법 .....	240
[표7-17] 제품(부품)의 교환 .....	240
[표7-18] 권역별 야간경관 연출 대상지 .....	241
[표8-1] 관련 법 및 위계 .....	250
[표8-2] 야간경관 계획의 수립방향 .....	251
[표8-3] 야간경관조명 자문 및 심의 대상 .....	253

## 〈그림목차〉

[그림1-1] 순천시 전경 .....	3
[그림2-1] 순천시 경관계획 체계 .....	46
[그림2-2] 순천 정원의 도시마스터플랜 .....	47
[그림2-3] 순천 정원의 도시마스터플랜 개요 .....	48
[그림2-4] 파리전경 .....	49
[그림2-5] 런던전경 .....	49
[그림2-6] 동경전경 .....	49
[그림2-7] 싱가포르전경 .....	50
[그림2-8] 서울 가로 색온도 계획 .....	50
[그림2-9] 국내외 색온도 계획 현황 .....	51
[그림2-10] Tonality plan (overview) .....	51
[그림2-11] Tonality plan - Details of the city center .....	51
[그림2-12]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1) - 존 별 위계(조도 및 휘도) .....	52
[그림2-13]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2) - 존 별 위계(색온도) .....	52
[그림2-14]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3) - 건축물 높이별 위계 .....	52
[그림2-15] 서울시 가로계획 .....	53
[그림2-16] 순천시 야경-1 .....	65
[그림2-17] 순천시 야경-2 .....	65
[그림2-18] 순천시 주간현황 .....	65
[그림2-19] 상향투광되는 조명기구 .....	65
[그림2-20] 도로조명 현황 .....	66
[그림2-21] 조명계획이 혼재된 야간현황 .....	66
[그림2-22] 원색적인 컬러를 사용하는 건축물 .....	67
[그림2-23] 정돈되지 않은 야간현황 .....	67
[그림2-24] 순천시 관광지 .....	68
[그림2-25] 순천시 문화재 .....	68
[그림2-26] 설문조사 개요 및 항목 .....	70
[그림2-27] 문제점 및 개선방향 .....	89
[그림3-1] 조명목표 .....	93
[그림3-2] 야간경관 미래상과 조명연출방향 .....	94
[그림3-3] 야간경관 추진전략 .....	95
[그림3-4] 야간경관 계획의 수립방향 .....	96
[그림3-5] 권역별 계획의 개념 .....	97
[그림3-6] 빛공해 관리 목표 .....	98
[그림3-7] 빛공해 관리 메커니즘 .....	98
[그림3-8] 의견수렴 방법 .....	99
[그림3-9] 야간경관 형성계획의 개념 .....	100
[그림3-10] 건축물 기준선과 스카이라인 .....	101

[그림3-11] 수직적 조명대상 연출 대상물 .....	101	[그림4-29] 조례호수공원 연출개념도 .....	127
[그림3-12] LIGHTING POINT .....	103	[그림4-30] 동천 및 주변교량 연출개념도 .....	128
[그림3-13] LIGHTING AXIS .....	103	[그림4-31] 패션의 거리(황금로, 연향동), 문화의 거리 연출개념 .....	129
[그림3-14] LIGHTING ZONE .....	103	[그림5-1] 주요 조망점 위치 .....	133
[그림3-15] 건축물 조명 규제 사항 .....	104	[그림5-2] 조망대상의 단면 개념도 .....	134
[그림3-16] 도시기반시설, 문화재 조명 규제 사항 · 105		[그림5-3] 조망대상의 현황 .....	134
[그림3-17] 도로/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조명 규제 사항 .....	106	[그림5-4] 조망점 연출 방향 .....	135
[그림3-18] 조명과 감시시스템을 적용한 가로등 이미지 .....	108	[그림5-5] 유형별 가이드라인의 분류 .....	138
[그림3-19] 친환경조명의 개념 .....	109	[그림5-6] 색온도 기준 예시 .....	141
[그림3-20] 신재생에너지 및 신기술 적용 예시 .....	109	[그림5-7] 건축물의 위치에 따른 색온도 기준 예시 ...	141
[그림3-21] 빛축제 활성화 계획의 방향 .....	111	[그림5-8] 문화재 예시 이미지 .....	142
[그림3-22] 야간경관 관련상품 예시 .....	111	[그림5-9] 도시기반시설 연출예시 .....	146
[그림3-23] 이벤트 활용물품 예시 .....	111	[그림5-10] 도로조명 설치 개념도 .....	150
[그림3-24] 별하늘 보존 예시 .....	111	[그림5-11] 도로조명 색온도 예시 .....	151
[그림4-1] 경관권역의 분류 .....	115	[그림5-12] 수변조명 연출 개념도 .....	154
[그림4-2] 조례호수공원 .....	116	[그림5-13]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고려사항 .....	160
[그림4-3] 순천향교 .....	116	[그림6-1] 순천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활용 절차 ...	171
[그림4-4] 원도심 시가지 .....	116	[그림6-2] 야간경관조명 자문 및 심의 절차 .....	171
[그림4-5] 아랫장 .....	116	[그림6-3] 야간경관조명 체크리스트의 행정 분류 ...	175
[그림4-6] 신도심 지역 .....	116	[그림6-4] 야간경관조명 체크리스트의 디자인 분류 ..	175
[그림4-7] 도심권역 .....	117	[그림7-1] 시범사업 대상지 .....	191
[그림4-8] 도심권역 개념 삽도 이미지 .....	117	[그림7-2] 순천시 지도 .....	192
[그림4-9] 농촌경관 .....	118	[그림7-3] 순천시내 지도 .....	192
[그림4-10] 순천만국가정원 .....	118	[그림7-4] 적용 파노라마 연출 .....	193
[그림4-11] 순천만습지 .....	118	[그림7-5] 성동오거리 .....	194
[그림4-12] 와온해변 .....	118	[그림7-6] 중앙사거리 .....	194
[그림4-13] 순천만권역 .....	119	[그림7-7] 연출사례 이미지 .....	194
[그림4-14] 순천만권역 개념 삽도 이미지 .....	119	[그림7-8] 성동오거리 연출방향 .....	195
[그림4-15] 문유산 산림 .....	120	[그림7-9] 중앙사거리 연출방향 .....	195
[그림4-16] 순천자연휴양림 .....	120	[그림7-10] 도로 색온도구획 개념도 .....	195
[그림4-17] 정혜사 .....	120	[그림7-11] 주간현황 .....	196
[그림4-18] 선암사 .....	120	[그림7-12] 조례호수공원 위치도 .....	196
[그림4-19] 전원생활권역 .....	121	[그림7-13] 야간휘도 현황 .....	196
[그림4-20] 전원생활권역 개념 삽도 이미지 .....	121	[그림7-14] 야간현황 .....	196
[그림4-21] 고인돌 공원 .....	122	[그림7-15] 연출예시 이미지-1 .....	197
[그림4-22] 낙안읍성 .....	122	[그림7-16] 연출예시 이미지-2 .....	197
[그림4-23] 월평구석기유적지 .....	122	[그림7-17] 연출예시 이미지-3 .....	197
[그림4-24] 송광사 .....	122	[그림7-18] 조례호수공원 도서관 연출예시 이미지 ...	198
[그림4-25] 문화보존권역 .....	123	[그림7-19] 연출사례 이미지 .....	198
[그림4-26] 문화보존권역 개념 삽도 이미지 .....	123	[그림7-20] 주간현황 .....	199
[그림4-27] 순천만습지 연출개념도 .....	125	[그림7-21] 순천문화예술회관 위치도 .....	199
[그림4-28] 순천만국가정원 연출개념도 .....	126	[그림7-22] 야간휘도 현황 .....	199
		[그림7-23] 연출예시 이미지 .....	200

[그림7-24] 연출사례 이미지 .....	200	[그림7-67] 주간현황 .....	217
[그림7-25] 주간현황 .....	201	[그림7-68] 조곡성당 위치도 .....	217
[그림7-26] 순천역 위치도 .....	201	[그림7-69] 야간회도 현황 .....	217
[그림7-27] 야간회도 현황 .....	201	[그림7-70] 연출예시 이미지 .....	218
[그림7-28] 야간현황 .....	201	[그림7-71] 연출사례 이미지 .....	218
[그림7-29] 연출예시 이미지-1 .....	202	[그림7-72] 주간현황 .....	219
[그림7-30] 연출예시 이미지-2 .....	202	[그림7-73] 신대지구 위치도 .....	219
[그림7-31] 주간현황 .....	203	[그림7-74] 주간현황 .....	219
[그림7-32] 기적의 도서관 위치도 .....	203	[그림7-75] 야간회도 현황-신대지구 하천 .....	219
[그림7-33] 야간회도 현황 .....	203	[그림7-76] 야간회도 현황-신대지구 아파트 .....	220
[그림7-34] 연출예시 이미지 .....	204	[그림7-77] 연출사례 이미지-하천, 교량 .....	220
[그림7-35] 연출사례 이미지 .....	204	[그림7-78] 연출사례 이미지-아파트등 고층건축물 .....	220
[그림7-36] 주간현황 .....	205	[그림7-79] 연출예시 이미지-1 .....	221
[그림7-37] 팔마체육관 위치도 .....	205	[그림7-80] 연출예시 이미지-2 .....	221
[그림7-38] 야간회도 현황 .....	205	[그림7-81] 연출예시 이미지- 신대지구 아파트 .....	222
[그림7-39] 연출예시 이미지 .....	206	[그림7-82] 주간현황 .....	223
[그림7-40] 연출사례 이미지 .....	206	[그림7-83] 동천 및 옥천 위치도 .....	223
[그림7-41] 주간현황 .....	207	[그림7-84] 야간회도 현황-동천(순천교방향) .....	223
[그림7-42] 검찰청, 법원 위치도 .....	207	[그림7-85] 야간회도 현황-동천(중앙하이츠 아파트방향) .....	223
[그림7-43] 연출사례 이미지 .....	207	[그림7-86] 야간현황-동천 스윙교 .....	223
[그림7-44] 연출예시 이미지-1 .....	208	[그림7-87] 연출예시 이미지-1 .....	224
[그림7-45] 연출예시 이미지-2 .....	208	[그림7-88] 연출예시 이미지-2 .....	224
[그림7-46] 주간현황 .....	209	[그림7-89] 연출예시 이미지-3 .....	224
[그림7-47] 순천문화건강센터 위치도 .....	209	[그림7-90] 연출예시 이미지-4 .....	224
[그림7-48] 야간회도 현황 .....	209	[그림7-91] 주간현황 .....	225
[그림7-49] 연출예시 이미지 .....	210	[그림7-92] 문화의 거리 위치도 .....	225
[그림7-50] 연출사례 이미지 .....	210	[그림7-93] 야간회도 현황 .....	225
[그림7-51] 주간현황 .....	211	[그림7-94] 연출예시 이미지-1 .....	226
[그림7-52] 낙안읍성 위치도 .....	211	[그림7-95] 연출예시 이미지-2, 3 .....	226
[그림7-53] 야간회도 현황 .....	211	[그림7-96] 주간현황 .....	227
[그림7-54] 야간현황 .....	211	[그림7-97] 황금로 패션의거리 위치도 .....	227
[그림7-55] 연출예시 이미지-낙안읍성 정문 연출 .....	212	[그림7-98] 황금로 야간회도 현황 .....	227
[그림7-56] 연출예시 이미지-낙안읍성 내 동헌(사무당) 연출 .....	212	[그림7-99] 시민로(성남교 방향)야간회도 현황 .....	227
[그림7-57] 주간현황 .....	213	[그림7-100] 시민로 UD 거리 조성 계획 .....	227
[그림7-58] 꿈의다리 위치도 .....	213	[그림7-101] 연출예시 이미지 .....	228
[그림7-59] 주간현황 상세이미지 .....	213	[그림7-102] 연출사례 이미지 .....	228
[그림7-60] 연출예시 이미지-1 .....	214	[그림7-103] 주간현황 .....	229
[그림7-61] 연출예시 이미지-2(컬러변화) .....	214	[그림7-104] 연향동 패션의거리 위치도 .....	229
[그림7-62] 주간현황 .....	215	[그림7-105] 연향로 패션의거리(부영초등학교방향) 야간회도 현황 .....	229
[그림7-63] 4대관문 위치도 .....	215	[그림7-106] 패션의거리 입구 폴 조명 .....	229
[그림7-64] 4대관문 예시이미지 .....	215	[그림7-107] 보안등 .....	229
[그림7-65] 연출예시 이미지 - 순천 IC연출 .....	216	[그림7-108] 연출예시 이미지 .....	230
[그림7-66] 연출예시 이미지 - 순천만 IC연출 .....	216		

[그림7-109] Non Cut-off, Cut-off 전후 비교 이미지 .....	230
[그림7-110] 주간현황 .....	231
[그림7-111] 죽도봉공원 위치도 .....	231
[그림7-112] 야간현황 .....	231
[그림7-113] 연출예시 이미지-1 .....	232
[그림7-114] 연출예시 이미지-2 .....	232
[그림7-115] 단계별 실행방안 .....	233
[그림7-116] 조도시물레이션 예시-1 .....	242
[그림7-117] 조도시물레이션 예시-2 .....	242





# 101

## 계획의 개요

- 1.1 배경 및 목적
- 1.2 계획의 범위
- 1.3 과업의 주요내용
- 1.4 계획의 수립과정





# 1. 계획의 개요

## 1.1 배경 및 목적

### 가. 과업명

순천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 나. 추진 배경

- 생활 패턴의 변화로 야간 여가활동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성 있고 매력적인 야간경관연출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야간조명 관리를 통해 빛공해 예방 및 생태도시와 에너지자립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 특색 있는 야간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력 도모

### 다. 과업의 목적

야간경관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아시아 생태문화수도를 목표로 한 순천시의 정체성 강화 및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그림1-1] 순천시 전경

## 1.2 계획의 범위

### 가. 기본방향

- 순천시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국토부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한 야간경관 특정경관계획 수립
- 순천시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사람과 생태를 고려한 빛공해 없는 친환경 조명계획 제시
- 도심의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경관조명으로 인한 도심 곳곳의 어둡거나 빛공해 경관인 야간경관 현황의 통합적 개선 및 관리방안 제시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의 설계개념을 반영한 안전하고 쾌적한 밤경관 제시
- 우리시의 아름다운 조명을 볼 수 있는 조망지점과 야간경관거점을 개발해서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제시
- 신재생에너지 및 신기술을 반영하여 생태도시와 에너지자립도시 이미지 제고
- 순천시 미래 빛경관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 및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획으로 영구적인 관리체계 제시

### 나. 과업개요

- 1) 과업명 : 순천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 2) 과업기간 : 약 2년 7개월(2017.04.26. ~ 2019.11.18)
- 3) 공간적 범위 : 순천시 행정구역 전역(도심권역 중점 범위)
- 4) 시각적 범위 : 2017년(기준년도) ~ 2030년(목표연도)
- 5) 내용적 범위 :
  - 순천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 순천시 야간경관 시범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 순천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제안
  - 기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경관조명으로의 대체 가능성 검토
  -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교육(주민,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
  - 야간경관 시범사업에 대한 개략 사업비 제시
  - 순천시 경관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1.3 과업의 주요내용

### 가. 야간경관 여건분석

#### 1) 계획의 여건분석

- 관련법, 위계,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체계분석
- 야간경관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 및 관련계획 검토
- 순천시 추진중인 계획 및 사업과 연계하여 여건분석
- ※ 순천시 경관계획 등과 연계 검토

#### 2) 야간경관 현황 및 환경조사

- 야간 빛 환경조사, 휘도 수치조사
  - 야간경관을 이루는 조명요소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
  - 경관조명 실시현황 조사
- 야간경관을 이루는 조명요소 등 조명환경 조사
- 경관조명 대상현황 조사
- 기존 노후 경관조명 설비개선 방안 및 실행계획
- 야간조명(가로등, 공원등 등) 설치현황 및 밝기 조사
- 야간경관 저해요인 및 발광 상업광고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 3) 경관의식조사

- 기존 야간경관 시설물에 대한 시민설문 및 만족도 조사
- 향후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시민설문 조사
- 시민, 방문자(관광객)들의 경관의식을 위한 설문조사, 인터뷰 등 조사
- ※ 조사내용은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및 지역 이미지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그 결과는 경관계획에서 연계에서 활용해야 함

#### (1) 국내외 야간경관 행정 및 사례조사

- 국내외 야간경관 성공사례, 실패사례, 정책적·기술적 동향 파악
- 야간경관 추진전략, 관리 및 운영, 마케팅 전략 등 파악

#### (2) 조사분석 종합

- 우리시 야간경관 체계화 및 통합관리를 위한 시사점 및 대안 도출
- 야간경관 세부 가이드라인 운영의 제도적 여건 및 법제화 방안 등

## 나. 야간경관의 기본 구상

### 1) 기본 방향의 설정

- 관련법, 위계, 야간경관계획의 체계 분석
- 야간경관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 및 관련계획 검토
- 순천시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계획 검토
- 순천시의 비전 및 추진중인 각종 계획 및 사업과 연계한 여건 분석
- 경관유형·요소별로 경관을 특정하게 보전·관리 및 형성하려는 기본방향 제시
- 경관특성, 주변환경, 입지적 특성, 현안 등을 고려하여 기본구상 방향 설정

### 2) 미래상의 설정

### 3) 추진전략의 제시

-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야간경관이 도시의 특화브랜드로 인식 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 제시
- 야간경관 기본구상 전략거점 및 중점 프로세스 선정 등 기본구상 제시
- 정책적 수요에 근거한 야간경관 체계화의 필요성 등 당위성 도출
- 목표와 기본방향, 미래상 등에서 제시된 내용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 제시
- 경관 유형이나 요소의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구체적 기술

### 4) 공간구조 설정

- 경관유형·요소별 입체적인 경관구조 및 공간특성 특화방안 설정
- 점, 선, 면 등으로 경관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상

## 다. 야간경관의 기본계획 수립

- 순천시 야간경관의 기본계획 및 권역별 야간경관 연출방향 설정
- 순천의 정체성을 담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야간경관 제시
- 야간경관의 랜드마크와 도시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는 추진전략 제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의 연계방안 제시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제안
- 도시경관과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시
- 공공시설물의 야간경관조명 관리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수립
- 기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과 경관조명과의 조화성 검토
- 민간건물에 대한 야간경관 형성 등을 위한 방향 제시

## 라. 야간경관 선도사업 발굴

- 1) 선도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 2)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사업비, 자원조달계획, 홍보 및 평가계획, 예산확보방안 제시
- 3) 선도사업 사업추진 및 모델 제시(도로 등 가로의 야간경관, 해안 및 교량 야간경관,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의 야간경관, 건축물 및 구조물 야간경관, 수변공간 야간경관 등)
- 4) 민간인 참여방안 및 사업 활성화방안 모색

## 마. 실행계획

- 1)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방안
  - 경관협정 추진계획, 유도 및 지원방안 제시
  - 민간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제시
- 2) 야간경관관리 제도개선
  - 경관법 체계 및 경관계획 수립기준 반영 검토
  - 제도적·행정적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리방안 제시
  - 기타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정한 사항 반영 검토
  - 기타 행정개선방안 및 관련계획 검토
- 3)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기/장기 사업계획 제시
  - 물리적 계획 및 비물리적 계획내용(시민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수립
- 4) 야간경관 관리 실행조직 및 실행체계에 관한 사항

## 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체크리스트 작성

- 1)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체크리스트 작성
- 2) 야간경관조명 대상시설물(건축물, 도로, 해안, 하천, 도시공원, 광장, 오픈스페이스, 도시기반 시설, 문화재 등)별 가이드라인 수립 및 체크리스트 작성
- 3) 경관계획수립 기준에 적합한 경관조명의 적용범위 연구
- 4) 도로조명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보조등 외) 및 체크리스트 작성
- 5) 연출, 유도,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지침 제시

## 사. 각종 보고회, 주민설명회, 순천시 경관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등

### 아.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선도사업 시뮬레이션, 가이드라인보고서 작성

## 1.4 계획의 수립과정

### 가. 공정예정표

구분	계획공정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용역착수	■											
사전조사 및 기본구성	■	■	■	■								
기본조사 및 사례분석	■	■	■	■								
착수보고		■										
기본계획 및 세부방안설정				■	■	■	■					
가이드라인 기준선정				■	■	■	■					
선도사업 분석				■	■	■	■					
야간경관 활성화방안검토								■	■	■		
가이드라인 기준확립								■	■	■		
중간보고											■	
자문 및 심의									■	■	■	
보완사항 개선									■	■	■	
주민공청회										■	■	■
최종보고												■
유지관리계획 및 교육												■

[표1-1] 공정예정표

### 나. 참여연구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보유자격	참여분야	주요경력
총괄책임자	누리플랜	본부장	한석춘		총괄	
분야별 책임자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희서	Ph. D	총괄	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전 IBS KOREA 회장 현 환경피해예방협회 빛공해 위원장
	누리플랜	실장	김광훈		디자인	조명디자이너협회 상임이사 한국환경조명학회 상임이사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교수	오민석	Ph. D	빛공해	현 태양에너지학회 총무부회장 현 서울시 좋은 빛 위원회 위원 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참여자	누리플랜	부장	서영상		디자인	
		부장	이상신			
		차장	장현우			
		과장	천지나			
		주임	김지원			
		사원	유숙진			
	사원	장민지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원	김기철		빛공해		

[표1-2] 참여연구자

# 02 조사 분석

- 2.1 관련법규 검토
- 2.2 관련계획 검토
- 2.3 국내외 사례조사
- 2.4 야간경관 현황조사
- 2.5 시민의식조사
- 2.6 조사분석종합





## 2. 조사 분석

### 2.1 관련법규 검토

#### 가. 목적 및 위계

순천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상위법 검토를 선 시행한 후 이와 관련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관련법을 검토함.

조명 종류의 구분은 기존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계획 보고서의 사례를 참조하여 구분하였음.

장식조명은 건축법, 가로등은 도로법, 보안등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공원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현행법상 야간경관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조례와 행정규칙 등을 고려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함.

구분	장식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법령	건축법	도로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빛공해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자치법규 및 자치규정	순천시 경관 조례				
	-	-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세부 적용 기준	-	KSA3701(도로조명기준) KSC7658(LED가로등) KSC8010(도로조명배광측정)	KSA3701(도로조명기준) KSC7658(LED보안등)	KSA3011(조도기준)	-
빛방사허용기준(환경부, 서울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장식조명에서만 언급하도록 한다.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장식조명에서만 언급하도록 한다.

※ 순천시 경관 조례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장식조명에서만 언급하도록 한다.

[표2-1] 관련 법 및 위계

## 나. 장식조명 관련 근거법 (건축물·문화재·도시기반시설·미디어 파사드 조명)

### 1) 건축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5호, 2017.1.17., 일부개정]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적용되는 장식조명의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본 법에서 적용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조명시설을 말함.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8.3.] [대통령령 제28005호, 2017.5.2., 일부개정]

이 법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적용되는 장식조명의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본 법에서 적용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조명시설을 말함.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빛공해 방지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84호, 2016.1.27.,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법은 도시미관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으로 인한 빛공해 방지 및 인체의 건강, 생태계 보호 등 환경 친화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2012년 7월 제정 및 2013년2월 시행됨.

주요내용으로는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를 중심으로, 옥외조명에 대한 심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자체의 조명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제시함. 빛공해 방지법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종~4종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의 성격을 제시한 후,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 (정의)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조명환경관리구역)

-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빛공해 방지법에서 조명기구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함. 대상 조명기구의 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제시함.

빛공해장비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함.  
옥외조명에 대한 심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5) 순천시 경관 조례 [시행 2017.3.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716호, 2017.3.3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야간조명을 경관요소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나 관리에 대한 근거가 규정되지 아니함.

조명 관리에 대한 범위나 관련 요소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대상과 규모를 구분하여 경관자문 대상 및 경관심의 대상을 지정함.

「순천시 경관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30, 2017.03.31>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9. “경관요소”란 건축물, 정원,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하천, 옥외광고물, 옥외주차장, 공개공지, 공개공간,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을 말한다.

제3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6.30>

1. 소위원회는 도시디자인 소위원회와 건축경관 소위원회로 나누며,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운영은 5명 이상으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3.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 법 제1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4. 건축경관 소위원회 :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5.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6.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순천시 경관 조례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장식조명에서만 언급하도록 한다.

[별표 1] <개정 2017.03.31.>

경관자문 대상 및 규모(제28조 관련)

자문대상	대상 및 규모		위원회
사회 기반 시설	1. 「도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 중 폭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이거나 총사업비가 5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연장이 2킬로미터 이상 4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사업비가 10억 이상 20억원 미만인 사업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공원시설로서 면적이 2,500 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대상은 제외) 4. 경관조명사업 총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도시 디자인 소위원회
건축물	공공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가. 공공청사 나. 문화회관·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다.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라.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물	건축경관 소위원회
	기타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별표 2] <개정 2017.03.31>

###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제25조, 제26조, 제29조 관련)

구분	대상 및 규모		위원회
사회 기반 시설	1. 「도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 중 폭 20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연장이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공원시설로서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광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 4.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5. 경관조명사업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도시 디자인 소위원회
건축물	경관지구	2층 이상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경관 소위원회
	중점경관 관리구역	순천시 경관계획으로 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범위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 일대 : 3층 이상 2.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대 : 3층 이상 3. 봉화산 일대 : 3층 이상 4. KTX 역세권 일대 : 3층 이상 5. 택지개발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포함) : 3층 이상 6. 해룡·울촌산업단지 : 3층 이상 7. 낙안읍성민속마을 일대 : 2층 이상 8. 조계산도립공원 일대 : 3층 이상 9. 상사호·주암호 일대 : 3층 이상	
	공공 건축물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가. 공공청사 나. 문화회관·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다.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라.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물 2.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기타	1.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구역 및 범위내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중심시가가로, 진입시가가로의 도로경계로부터 30m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도로경계가 완충녹지에 접한경우 완충녹지까지 도로경계로 본다.) 다만, 중심시가 가로의 경우 도로 경계에 직접 접하지 않고 대지 진·출입로를 중심시가 가로에 접한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대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기타 지역으로서 6층 이상 또는 3,000㎡이상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6)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시행 2015.12.30.]

[환경부고시 제2015-243호, 2015.12.30., 제정]

이 고시는 장식조명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과도한 빛에 의한 불쾌감, 불필요한 빛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 기준을 제시함. 장식조명 발광표면의 휘도기준을 명시함.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KS A 3011:1998 조도 기준  
 KS C 7712:2014 LED 투광등기구  
 KS C IEC 60529 외관의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 등급(IP 코드)  
 ES 11000-2013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7)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 2016.7.14.]

[서울특별시조례 제6302호, 2016.7.14., 일부개정]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좋은빛 형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조명기구의 정의 및 범위를 명시함. 미디어파사드 조명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근거를 마련함.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들을 말한다.  
 4.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을 말한다.  
 5. "빛축제"란 전구, 전등 또는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축제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조명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식조명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구분	시설규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8)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4.7.]

[서울특별시규칙 제4083호, 2016.4.7., 일부개정]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조명계획수립 기준 및 빛방사허용기준 제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7>

1. "상향광"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말한다.
2. "발광표면"이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3. "조명지원사업"이란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조명계획수립 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옥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한 조명계획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7>제4조(빛방사허용기준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리구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단,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200m

이내의 인접지역과 그 밖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조명기구에 대한 상향광 등급, 발광표면휘도 등은 조례 제10조의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7>

**9)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8. 7. 13.] [법률 제15639호, 2018. 6. 12., 일부개정]**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다. 가로등 관련 근거법 (도로·수변 조명)**

**1) 도로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9호, 2017.1.17., 일부개정]**

도로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법.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도로의 종류,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도로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을 지칭한다. 또한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도로법」

제2조 (정의)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철도건설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23호, 2017. 12. 26., 일부개정]**

철도건설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철도건설법」

제2조 (정의)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도시철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도시철도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7.]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2015.7.22., 일부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 유도시설, 조명시설, 도로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도로안전시설 등)

-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 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빛공해 방지법에서 조명기구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예규 제146호, 2016.12.30., 일부개정] 제2편 조명시설**

이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음. 주요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의된 조명시설,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1.3 용어의 정의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이다.  
 2. 기능 및 조명 요건  
 2.1 기능  
 조명시설의 주 기능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 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2.2 조명 요건  
 조명은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나.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다. 적절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  
 라. 조명시설이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7)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시행 2014.11.28.]

[환경부고시 제2014-211호, 2014.11.28., 제정]

이 고시는 가로등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함.

설치장소, 상향광 등급, 빛방사허용기준 등 기준을 제시함.

산란광, 침입광, 글레어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함.

<p>「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p> <p>제2조(적용범위)</p> <p>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p> <p>KS A 3701:2007 도로 조명 기준                  KS C 7658:2011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 C 8000:1992 조명 기구 통칙                  KS C 8010:1999 배광 측정 방법(도로조명기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조명시설편(2012.11 개정고시, 국토해양부)</p> <p>제3조(기본원칙)</p> <p>① (산란광 저감)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되도록 수직각 90°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② (침입광 저감) 조명기구가 설치된 주변에 주거지 등 조명시설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조명기구로 인하여 과도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③ (글레어 저감)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도로이용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p>
---

8) 부산광역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2016. 6. 29 훈령 제1444호]

이 규정은 「도로법」 31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로교통의 기능을 보완하고 도시경관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도로조명의 기준 및 등급, 등기구별 설치 규격을 명시함.

<p>「 부산광역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p> <p>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도로조명시설"이란 공공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p>
---

- 가. "가로등"이란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로서 조명의 제어를 그룹으로 하며 전기의 사용량을 종량제 한전계약방식으로 하는 도로조명시설을 말하며, 보행등, 육교등 및 하이마스트등을 포함한다.
- 나. "보안등"이란 보행자(자전거 운전자 포함)가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로서 조명의 제어를 독립적으로 하며 전기 사용량을 정액제 한전계약방식으로 하는 도로조명시설을 말한다.
- 다. "터널등"이란 터널 안 교통기능 보안을 위해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라. "지하보·차도등"이란 지하보·차도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4. "가로등주"란 등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철 또는 비철주를 말한다.

## 라. 보안등 관련 근거법 (보행로·수변 조명)

###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법) [시행 2017.7.26.]

####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은 보행자길에 대한 정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이 기술됨.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② 특별시장등은 도로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2. 해당 도로의 관리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도로교통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시행일 : 2018.3.22.]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행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보도(歩道)용 방호(防護)울타리
2. 조명시설
3.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점자블록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

7. 보행자길 및 도로의 조명시설

가.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효율의 향상, 운전자 및 보행자의 불안감 제거 및 피로 감소,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하여 보행자길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조명시설은 적절한 노면(路面) 밝기가 유지되고, 밝기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볼 때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고, 횡단보도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보행자를 식별하기에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빛공해방지법에서 조명기구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5)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시행 2013.12.31.]

**[환경부고시 제2013-606호, 2013.12.31., 제정]**

본 고시는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제시함.

산란광, 침입광, 글레어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함.

보안등, 공원등의 선정 및 설치 기준 제시 (상향광등급, 빛방사허용기준)

「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보행자길, 공원 녹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단, 공원내 수목등과 볼라드등은 제외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KS A 3701:2007 도로 조명 기준  
 KS C 7658:2011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8010:1999 배광 측정 방법(도로조명기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조명시설편(2012. 11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제3조(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란광 저감)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되도록 수직각 90도 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침입광 저감) 조명기구가 설치된 주변에 주거지 등 조명시설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조명기구로 인하여 과도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글레어 저감)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되도록 도로이용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부산광역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2016. 6. 29 훈령 제1444호]**

이 규정은 「도로법」 31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로교통의 기능을 보완하고 도시경관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야간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 조도 기준을 명시함.

「 부산광역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로조명시설"이란 공공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나. "보안등"이란 보행자(자전거 운전자 포함)가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로서 조명의 제어를 독립적으로 하며 전기 사용량을 정액제 한전계약방식으로 하는 도로조명시설을 말한다.

제9조의2(빛공해 예방 및 경관관리)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시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노력과 아름다운 야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에서 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및 장식조명 설치·관리 관련 권고기준을 참조 활용하여야 한다.

**7)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시행 2009.6.15.]**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100호, 2009.6.15., 제정]

이 조례는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은 안전과 편의설비 위주로, 조명이나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명시된 기준은 없음.

「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3조(기본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 7.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 마. 공원등 관련 근거법 (오픈스페이스 조명)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39호, 2016.5.29., 일부개정]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등이 기술되어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2.>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2) 하천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하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 3. 23.>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나. 댐·하굿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해수욕장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기본 및 기능시설
    -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 2) 산책로
    -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 5) 오수·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나. 지원시설

- 1)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 2) 체육시설
- 3) 판매·대여시설

다.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빛공해 방지법에서 조명기구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5)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시행 2013.12.31.]

[환경부고시 제2013-606호, 2013.12.31., 제정]

이 고시는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보행자길, 공원 녹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단, 공원내 수목등과 볼라드등은 제외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KS A 3701:2007 도로 조명 기준

KS C 7658:2011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8010:1999 배광 측정 방법(도로조명기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조명시설편(2012. 11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제3조(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란광 저감)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되도록 수직각 90도 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침입광 저감) 조명기구가 설치된 주변에 주거지 등 조명시설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조명기구로 인하여 과도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글레어 저감)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되도록 도로이용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시행 2009.6.15.]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 1100호, 2009.6.15., 제정]**

이 조례는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은 안전과 편의설비 위주로, 조명이나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명시된 기준은 없음.

「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3조(기본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바. 광고조명 관련 근거법 (옥외광고물·미디어 파사드 조명)**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빛공해 방지법에서 조명기구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시행 2014.11.28.]

[환경부고시 제2014-212호, 2014.11.28., 제정]

본 고시는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옥외광고물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제시. 휘도기준 준수, 에너지 절감, 경관/주변환경 배려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 옥외광고물 조명기구의 선정 및 설치에 대한 기준(휘도기준)을 제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관리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광고조명에 적용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은 제외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안전행정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시행 2013. 5. 16, 환경부고시 제2013-48호, 환경부)  
 KS C 7613(2009 확인) 휘도 측정 방법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제3조(기본 원칙)  
 ① (휘도기준 준수) 최적의 배광 설계 및 기구 설치로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도로이용자나 거주자에게 시각적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시각 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에너지 절감) 과도하고 현란한 조명의 자제,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점·소등시간의 적절한 관리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다.  
 ③ (경관/주변환경 배려) 건축물 또는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산란광, 침입광이 유발되지 않도록 경관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친환경적 조명환경을 조성한다.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17.9.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74호, 2017.9.21., 일부개정]**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광고조명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명시함.

조례 본문에 심의대상을 명시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제시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7.13.>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3.>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시·자치구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시·구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또는 시·자치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9.21>
1.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 가.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센티미터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한다)
    - 나.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규격확대, 위치·장소 변경, 사용 자재변경을 포함한다)
    - 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라.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
    - 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 다.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 라.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7.7.13]

5)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17.4.23.]

[부산광역시조례 제5549호, 2017.3.22., 일부개정]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